

『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·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.
-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
-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회재난의 적용 범위를 규정(안 제3조)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
- 사회재난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사회재난 지원의 중복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생활안정지원 절차, 지급방법, 환수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

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이 개정됨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시설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